

石光現 교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國際去來法과 國際私法의
現狀과 課題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

하 서

내가 미국유학에서 돌아와서 온갖 방해와 난관을 극복하고 인생의 항로를 모교에서의 학문의 길로 정했을 때 당시의 학문 풍토가 너무나도 척박하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음을 몸소 체험했다. 따라서 나는 학계의 선배들 중 훌륭한 업적을 내신 분도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것보다도 혹독한 일제시대, 비참한 한국 동란의 참화 그리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지독한 가난을 참고 극복하면서 학문의 대(代)가 끊이지 않도록 이어주신 뜻 선배들이 세대적 임무를 완수하신 공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즉 어느 특정한 한두 분을 기억하기보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문의 맥을 이어주신 그 선배 세대(世代)들에게 대한 포괄적인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일본법학에의 과도한 의존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쳤던 세월이 회상된다.

그러나 점차 학문적 질서와 기초가 바로 잡히면서부터는 분야별로 개개의 학자나 교수들의 업적과 활동이 찬연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는 속에서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학문후속세대의 한 분이 석광현 교수이다.

석광현 교수의 정년기념 현정논문집에 하서(賀書)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석광현 선생은 그 인품이나, 걸어온 발자취나, 실무와 학문의 세계를 아우르는 능력, 오지랖 넓은 학문적 연구 범주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무궁하기 때문이다. 사실 석광현 교수는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에서 10여 성상동안 국제적 법률 실무를 하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초를 다지면서 그 중요한 본보기가 된 분이다. 대학으로 옮겨온 후에도 석광현 교수는 2022년 2월 말로 정년퇴임하기까지 실무와 학문 활동을 합하여 40년간의 찬란한 법률가의 경력이 누구보다 눈에 띠는 인재이다. 그의 장구한 법조경력 중에서 학계에 몸담으면서 연구에 앞장선 분야를 보면 나와 관계를 맺었던 국제거래법은 물론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상사중재법과 국제도산법 등 우리나라의 척박한 학문풍토에서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던 어려운 현실에 뛰어들어서 이 난삽한 각 분야를 국제 실무로 통합하여 체계적 연구를 하는 모범을 보인 유일한 학자이다. 실제로 그 당시 관심도 없고 정보나 자원도 없어서 아무도 염두를 못낸 일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기념비적인 성취를 가져온 탁월한 능력자이다. 즉 우리나라 굴지의 로펌에서 국제거래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남의 모범이 되는 전문성 높은 법률실무가였고, 학계로 진출하여서는 실로 전형적인 공법분야만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법분야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이론 연구, 판례 분석, 외국 법제의 비판적 소개, 국제 규범의 번역, 국내와 국제 학회에의 연결과 공헌 등의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자였다. 김앤장에서 주로 국제금융거래를 전문으로 실무에 종사할 때에는 그의 탁월함을 외부 학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가 한양대로 이적하기 몇 년 전에 연달아 국제거래법학회에서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이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논문들은 종래의 편협한 칸막이식 접근방법을 타파하고 약관규제, 담보, 도산 등의 법제를 모두 망라한 신선한 자극제였기에 내가 무척 탄복했었다. 특히 학계에 합류한 후에 출간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여섯 권은 각종 국제계약법과 국제불법행위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도산법, 섭외사법, 국제전자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금융거래법, 국제지적재산권법 등을 망라하여 체계있게 천착해온 우리나라 초유의 값진 학문적 종합적 시도였다.

석광현 교수는 한국 법학 내지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를 위하여 늘 쓴 소리를 하고 꾸준히 노력해온 첨병이었다. 사실 내가 이러한 국제화의 노력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우리 법의 수출을 통한 한국법의 세계화에 노력하였다고 한다면, 석광현 교수는 반대방향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규범을 한국법으로 수용하는 면에서는 한국 유일의 개척자 내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이 2005년 발효되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국제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 정진하고 후학을 길려내고자 무한 애를 썼다. 즉 그는 외국법의 수입과 수용을 통한 한국법의 국제화에 기여한 유일한 교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무관심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석광현 교수는 무척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다. 아마도 마음을 활짝 연 그의 학문적 태도와 엄청난 업적이 제

대로 인정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

석광현 교수는 나와는 사제간의 인연이 맺어진 제자 중의 한 분이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1990년 창립한 국제거래법학회의 제10대 회장을 2013년부터 2년간 역임하였다. 그가 2006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도산법”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는 나를 뼈 학문적으로 고무하고 흥분시켰던 기억이 있다. 우선 거의 모두들 민사소송법을 어렵게 생각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현저한 분위기에서 훨씬 더 어려운 국제민사절차법과 국제도산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고 든든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실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1990년대 말 기업정리 관련법제를 정비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를 중심으로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화의법 등의 분야에 관한 입법적 정비임무를 담당하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해갈수록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서울법대에서 부족하나마 대학원 강의도 처음 시작했던 일이 있다. 이러한 나의 외침은 그런대로 석광현 교수에게 학문적 울림이 있었던지 석광현 교수가 이 같은 탁월하고도 장문의 연구발표를 한 것이 지금도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 논문은 국제도산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념비적 연구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뜻한 바 있어 좀더 체계적인 학문연구를 위하여 한양대를 거쳐 모교로 이적하여 후학을 양성하던 중 이제 맞이한 정년은 언젠가 한 번은 제도적으로 닥칠 순간이지만 탁월한 학자가 혼연의 자리를 후학에게 넘긴다고 하니 다소 가슴이 텅 빈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상념일까.

2007년 서울대에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담당 교수로 부임한 석광현 교수는 일본에서 서양법 계수과정에서 법례(法例)라고 칭하였다가 국제사법이라고 겨우 과목명을 바꾼 이 분야가 국제거래의 기본법으로서 법의 저촉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후학을 양성해왔는데 이제 정년이라고 하니 이 중요한 분야의 학문적 후속세대가 이어지지 못할까 걱정스럽기 짹이 없다. 그러나 그의 높은 학문적 경륜과 업적, 국제적 경험 그리고 불같은 정열은 모든 초국경적 상거래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자양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정년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지만 석광현 교수의 변함없는 건강과 왕성한 활동 그리고 빛나는 연구업적을 보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법학계와 법조실무계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2. 2. 23.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